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우리의 대응

대한민국정부

이 책자는 2019년 8월 초까지의 상황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상황 및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가 지속 이루어질 것이며, 해당 내용은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이나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우리의 대응

차 례

I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

- 일본 조치 관련 사실관계 — 10
- 일본 조치의 문제점 — 11
- 우리 정부의 입장 — 14

II Q&A로 알아보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우리의 대응

■ 배경과 경과

Q01. 한국은 바세나르(WA) 협약체제를 이행하고 있나? — 20

Q02. 일본이 주장하는 “부적절한 사안”이란? — 20

Q03.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문제가 있어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한 것인가? — 20
Q04.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 21
Q05. 수입선 다변화 등 한국의 자구노력은? — 22
Q06. 수출통제 당국 간 협의 결과는? — 22
Q07.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23
Q08.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영향은? — 23
Q09. 일본의 요청에도 3년간 협의도 없었고, 의견교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데? — 24
Q10. 과거 협의회에서 일본이 한국의 캐치올 제도를 문제 삼은 적이 있는지? — 25
Q11.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는? — 25
Q12. 전략물자 수출허가가 산업부, 방사청, 원안위 등 각 소관 기관에 나누어져 있는데, 통합해야 하는 것 아닌지? — 26

차 례

■ 외교적 노력 및 국제공조 방안

Q13. WTO 합치성 여부는? — 27

Q14. WTO 제소 여부는? — 27

Q15. WTO에 제소 시 최종 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 28

Q16. WTO 제소가 실효적인 대응책인지? — 28

Q17. 금년 연말에 WTO 상소기구가 정지되면 WTO 제소가 의미 없게 되는 것 아닌지? — 29

Q18. WTO 일반이사회(7.23~24)에서 한국이 주장한 내용은? — 29

Q19. WTO 일반이사회에서 한국의 발언에 대한 일본의 반응 및 여타 국가의 발언 여부는? — 30

Q20. 그간 WTO에서의 대응 실적과 향후 대응 계획은? — 30

Q21. 일본 수출규제 관련 국제공조 방안은? — 31

Q22. 향후 국제공조 계획은? — 32

Q23. 국제공조를 통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지? — 32

Q24. 현재까지 미국과 접촉한 결과 미국의 반응(입장)은? — 33

■ 전개 상황 및 극복 노력

Q25. 일본의 조치 이후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동향은? — 34

Q26. 3대 품목 개별허가 전환이 3일 만에 전격 진행되었는데, 절차법적 문제는 없는지? — 34

Q27. 소재·부품 육성정책을 계속해왔는데 자립화가 낮은 이유는? — 35

Q28. 핵심 품목 대외 의존이 지속되는데 극복할 수 있는지? — 35

Q29. WTO 제소, 수입선 다변화, 품목 국산화 등 한국이 제시하는 대책들은 단기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 아닌지? — 36

Q30. 그동안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국산화가 제대로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 37

Q31.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각의 결정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조치는? — 38

Q32.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계기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 38

차 례

Q33. 한일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특사 파견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 39

Q34. 아베 일본 총리는 "한국이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 논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 했으며,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 정부가 전향적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 한일 정상회담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는데, 향후 양국 협의 전망은? — 40

Q35. 한일 GSOMIA 연장 여부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 40

Q36. 미국의 고위 관리가 한일 간 현상동결합의 (standstill agreement) 방안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 41

■ 강제징용 판결과 청구권협정 문제

Q37.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내용은? — 42

Q38.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은? — 42

Q39.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 보도자료의 정부 입장과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은? — 43

Q40. 일본 외무성이 청구권협정 협상기록 등을 공개하며,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데? — 44

Q41. 청구권협정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 한일 양국 간 분쟁이 있다면 일본의 요구대로 청구권협정상 중재로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닌지? — 45
Q42. 일본은 강제집행에 따른 현금화 등으로 일본 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 49
Q43.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은 없는지? — 49

■ 기타

Q44. 한국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는? — 50
Q45. 서구 언론의 주요 논조는? — 51
Q46. 최근 한일 간 민간·지자체 교류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 52
Q47.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만, 아세안 등 다른 아시아 국가 등과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되돌리는 것이 아닌지? — 53

I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

■ 일본 조치 관련 사실관계

■ 일본 조치의 문제점

■ 우리 정부의 입장

■ 일본 조치 관련 사실관계

■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공식 발표하고, 7월 4일부터 동 품목에 대해 규제 실시(포괄수출허가 → 건별 허가)

*반도체 ·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ㅇ백색국가 배제는 7월 24일 의견 수렴을 종료하고 8월 2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

* 일본 경제산업성은 8월 28일 시행 예정이라 발표(1,194개 물자에 적용 가능)

■ 한편, 일본 정부가 제시하는 수출규제 근거는 계속 변경

ㅇ백색국가 배제 검토의 근거로 제시하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제도 한국 미(未)도입" 등도 사실과 전혀 다름

< 수출규제 공식 발표 이후 일본 정부가 제시한 수출규제의 근거 >

7월 1~6일 징용문제, 청구권 협정 위반	7월 7일 불화수소 북한 반출	7월 12일 캐치올 규제 미비 등
• (경제산업성) 한국, 징용문제 해결책 未제시로 양국간 신뢰 훼손 • (아베 총리) 청구권 협정이 지켜지지 않은 점을 언급	• (아베 총리)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켜야 한다고 언급 • (일본 언론) 불화수소가 화학무기나 핵무기 제조공정에 사용될 우려	• (3대 품목) 수출 관련 부적절한 사안 발생 (구제적 근거 未제시) • (백색국가 배제) 캐치올 규제 미흡, 양자협의 3년간 부재

■ 일본 조치의 문제점

■ 조치 근거 불명확 →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무역보복

ㅇ“양국 간 신뢰 손상”(7.1),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7.7), ”재래식 무기 캐치올 규제 신뢰 저하“(7.12)와 같이 일관성 없이 계속 변화

ㅇ이는 최근의 수출규제 조치가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해진 것임을 방증

ㅇ일본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의 불충분(부적절한 사안, 캐치올 규제 미흡 등)을 지적하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음

- 한국은 4대 수출통제체제*의 모범회원국으로 선진적인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여 지역안보에 긍정적으로 기여

  *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바세나르체제(WA)

- 한국은 재래식 무기와 관련한 엄격한 제도적 틀을 기 구축(대외무역법, 수출입고시, 국제평화고시)

  ※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2019년 5월 23일자 국가별 전략물자 무역관리 평가 결과 발표에 따르면, 평가대상 총 200개국 중 한국은 17위, 일본은 36위

- 백색국가 중에서 일본과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며, 협의체가 없는 국가들에 대해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사례도 없음

  * 한국과 일본 정부는 국장급 협의회, 콘퍼런스,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다양한 계기에 수출통제제도 관련 정보를 교류해왔고, 최근 국장급 수출통제 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은 양국 간 일정조율이 여의치 않아 금년 3월 이후 개최하자고 양해된 사안임

■ 다자무역체제를 위협하는 일방적 조치의 나쁜 선례로 작용할 우려

ㅇ일본은 그간 WTO, G20, APEC 등 다자 포럼에서 "규범기반 다자무역체제(rules-bas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의 유지·발전을 주장하며 우리나라와 함께 노력해왔으나, 최근 조치는 그간 일본의 행동과 상충

- 일본의 조치는 2019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일본이 주창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환경 구축"이라는 정신에도 불합치

■ WTO 등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보복 조치

ㅇ일본의 조치는 한일 양국 기업 간 선량한 거래를 방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바세나르 체제의 기본지침에 위배되고 무역과 국제협력을 방해하는 측면에서 호주그룹 가이드라인에 위배

* 바세나르 체제 기본지침(제1조 제4항)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여 적용하거나 선량한 민간 거래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 호주그룹 가이드라인(제1조)은 "생화학무기 확산 및 테러리즘에 관계없는 생화학물질의 무역과 국제협력을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명시

ㅇ또한 WTO, GATT 제11조는 관세, 조세 및 부과금을 제외한 일체의 수출입 제한조치를 금지하며, WTO, GATT 제1조는 모든 회원국과의 무역에 있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

-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한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며, 다른 백색국가에 비해 한국과의 무역을 차별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WTO, GATT 규정에 어긋남

○ 그러나 이번 일본의 조치는 오히려 안전보장보다는 청구권 이슈와 같은 역사적 쟁점을 근거로 한 자의적 조치이므로 허용되지 않음

■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심각한 피해 예상

○ 일본의 조치(포괄허가에서 건별허가로 변경)에 따른 심사지연 및 허가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한국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

- 대체가능성 등에 따라 일부 업종의 경우 생산 차질 발생 가능

○ 핵심소재 분야에 있어서 양국 간 교역의 불확실성을 유발하여 양국 간 교역에 큰 차질

- 실제로 핵심소재의 교역이 차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양국 간 공급망에 심각한 손실 유발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는 한국의 메모리와 디스플레이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소재를 공급하고 메모리와 디스플레이를 구매하는 일본 기업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언급

- IT·전자기업에 이어 산업 전반의 글로벌 공급망에 악영향 가능성 증대

※ 159개 품목 관련 주요 영향 업종 :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등

※ 2018년 한국의 D램 반도체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삼성전자 43.9%, SK하이닉스 29.5%로 전체 73.4%이며, 삼성·LG는 디스플레이 패널 분야에서 가장 신뢰받고 있는 공급원

※ 미국 업계(ICT 산업 중심 6개 경제단체*)는 일본 경제산업상과 우리 통상교섭본부장 앞으로 일본 조치에 대한 우려 표명(세계 경제에 손해 야기 가능) 및 분쟁의 조속한 해결 촉구 서한 송부(7.23)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정보기술산업협회(ITI), 전미제조업협회(NAM),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컴퓨팅기술산업협회(CompTIA), 소비자기술협회(CTA)

■ 이번 조치는 한일 간 호혜적 협력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

*2018년 한일 교역액 : 851억 달러(한국의 수출 305억 달러, 수입 546억 달러, 무역적자 241억 달러)

- 중국, 미국에 이어 상호 제3위 교역대상국

○한국 정부는 일본의 첫 조치 발표(7.1) 이후 양국 간 대화를 촉구한데 이어 UN 안보리 전문가 등 국제기구에 공동조사까지 제의하는 등 대화와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 노력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차별적 무역보복 조치 재차 강행(8.2)

○그동안 분업·협업·경쟁을 통해 유지되어온 양국의 경제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상황

■ 우리 정부의 입장

< 8월 2일 백색국가 제외 관련 대통령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 >

•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음

•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
-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
-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가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

• 일본의 조치는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 분명
-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 행위

•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
•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
  -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으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
• 정부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제고 계기로 삼을 것

■ 일본 조치에 깊은 유감 및 철회 촉구

○ 8월 2일 일본의 결정은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
  - 일정 시한을 정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며 협상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불응

○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비롯해 정당한 근거 없는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재차 요구하며, 양자협의 재개를 촉구

■ 일본과 외교적 해결을 위해 대화할 의지 - 대응·맞대응의 악순환 불원

○ 한일 양국은 국교정상화 이후 경제, 안보, 문화,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의 발전을 지원해온 우방국이며, 앞으로도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 한국 정부는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되, 실질협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투트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

○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일방적인 압박을 중단하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복귀하여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당사자들과 양국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협의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

■ 국제사회에 관심 촉구

ㅇ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제공조 노력 가일층

-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WTO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
- 주요국·국제기구·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아웃리치도 더 적극 전개

ㅇ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무역보복은 한일 양국 간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를 가해자가 헤집는 것으로, 일본은 국제사회의 양식이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ㅇ일본의 조치가 정치적 동기를 근거로 무역 제한 및 교란적 조치(trade restrictive and disruptive measures)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세계 모든 국가들이 관심·우려를 갖고 주목하도록 노력

■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 및 정부 지원

ㅇ온·오프라인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애로 접수 및 맞춤형 지원

ㅇ주요 품목 물량 확보 및 신규 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 인력운용 유연화를 통해 공장 신증설 지원

ㅇ추경을 통해 수출규제 대응 소요 예산 2,732억 원을 반영했고, R&D 세액공제 확대 및 피해기업 세제 부담 완화 지원

ㅇ피해기업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소재 · 부품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금융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

■ 산업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

- ㅇ100여 개 전략 핵심품목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 빠른 기술축적을 위한 R&D 혁신 등으로 기술개발 집중 지원
- ㅇ수요-공급기업 간 및 수요기업 간 협력모델 정착을 위한 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국내 공급망 구축
- ㅇ기술개발이 실제 수요기업의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증 및 양산 테스트, 신뢰성 보증 등 단계별 정책 연계지원 강화
- ㅇ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종합대책 마련(8월 중)

Ⅱ

Q&A로 알아보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우리의 대응

■ 배경과 경과

■ 외교적 노력 및 국제공조 방안

■ 전개 상황 및 극복 노력

■ 강제징용 판결과 청구권협정 문제

■ 기타

Q.01 한국은 바세나르(WA) 협약체제를 이행하고 있나?

■ 한국은 1996년 바세나르 체제*에 가입한 이래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 중

*재래식 무기,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통제에 관한 바세나르 체제

■ 일본의 조치는 "모든 회원국이 특정국가나 특정국가군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바세나르 체제의 기본지침을 위배한 것임

Q.02 일본이 주장하는 "부적절한 사안"이란?

■ 일본은 수출관리상 한국의 "부적절한 사안"을 이번 수출규제 조치 배경으로 들고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Q.03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문제가 있어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한 것인가?

■ 한국은 선진적인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 일본이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와 비교 시 한국의 제도가 불충분하다고 할 근거는 없음

■ 아울러, 한국은 여타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으로부터 전략물자 관리에 관한 어떠한 지적도 받은 바 없음

* 4대 수출통제 체제 : WA(바세나르 체제),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NSG(핵공급국그룹), AG(호주그룹 : 화학물질 수출 통제 협의 그룹)
*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전세계 200개국 전략물자 관리지수 순위 발표(2019.5.23) ⇒ 한국은 17위, 일본은 36위로 평가

Q.04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영향은?

■ 일본 정부가 수출통제를 강화한 3개 품목은 일본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품목으로 우리 업계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ㅇ다만, 실제 생산차질 등 피해로 연결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

■ 2018년 D램 반도체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삼성전자 43.9%, SK하이닉스 29.5%로 전체의 73.4%이며, 삼성·LG는 디스플레이 판넬 분야에서 가장 신뢰받고 있는 공급원임

ㅇ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차질 발생시 △가격 상승 △공급 지연 등으로 IT·전자기업(애플, DELL 등 미국 기업 포함) 전반에 영향 우려됨

Q.05 수입선 다변화 등 한국의 자구노력은?

■ 한국 정부와 업계는 그간 국산화 확대, 수입선 다변화 등 대응 노력을 지속해왔고,

ㅇ향후에도 긴밀한 민관 공조를 통해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음

■ 그럼에도 일본의 이번 조치로 한국 업계 및 글로벌 공급망(GVC)에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며,

ㅇ일본의 조치가 이후 여러 가지 동기에 따라 회원국 간 무역 제한 및 교란적 조치(trade restrictive and disruptive measures)를 취할 수 있게 하는 선례가 될 우려가 있음

Q.06 수출통제 당국 간 협의 결과는?

■ 일본은 백색국가 배제 사유가 한국 법령상 캐치올(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통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이는 사실과 다르며, 한국은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캐치올 통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

ㅇ7월 12일 양자협의 시 한국의 캐치올 제도를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일본은 한국의 캐치올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함

Q.07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일본에서 나오는 주장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임

■ 이로 미뤄볼 때 일본의 주장을 비롯해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일본의 설명 :❶ 한국의 수출규제(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불충분
❷ 양국 간 신뢰관계 훼손 ❸ 안보상 이유 등

Q.08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영향은?

■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는 기업부담 증가, 공급망 안정성 저해 등 한국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한국 정부는 업계와 함께 품목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정부는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해나갈 계획임

Q.09 일본의 요청에도 3년간 협의도 없었고, 의견교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데?

■ 3년간 협의나 의견교환이 없었다는 일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ㅇ한국과 일본은 양국 주최의 세미나, 콘퍼런스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해왔음

■ 일본은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협의회'가 열리지 않았던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ㅇ당시 양국 간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아 금년 3월 이후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양해된 사안임

ㅇ동 협의회는 2008년 이후 1~3년 간격으로 개최되었고, 과거에는 3년간 열리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일본은 이에 대해 특별한 문제를 제기한 바 없음

■ 일정 조율 문제로 인해 최근 협의회가 개최되지 못했던 것을 한국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 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를 재차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유감임

■ 국제수출통제체제 이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하위 규정, 실제 운영 등을 종합 고려하면, 재래식 무기 캐치올의 제도적 틀을 구비했음

Q.10 과거 협의회에서 일본이 한국의 캐치올 제도를 문제 삼은 적이 있는지?

■ 일본의 문제점 지적은 없었으며, 최근 협의회 관련 의제에도 일본 측은 한국의 캐치올 제도를 논의 의제로 제안한 바가 없음

Q.11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는?

■ 금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

■ 따라서, 한국 정부는 국익을 대변하고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적극 설명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했음

Q.12 전략물자 수출허가가 산업부, 방사청, 원안위 등 각 소관 기관에 나누어져 있는데, 통합해야 하는 것 아닌지?

- 미국도 한국처럼 분산형 시스템을 택하는 등 수출관리제도는 각 나라별 상황에 맞게 운용하는 것임

- 특히, 전략물자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품목별 특성과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Q.13 WTO 합치성 여부는?

■ GATT 제11조는 원칙적으로 수출 허가와 같은 수출규제 조치를 금지함

ㅇWTO 제소를 준비 중인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신중함이 요구됨

■ 일본이 원용할 수 있는 안보예외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역사적 쟁점을 근거로 한 자의적 조치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Q.14 WTO 제소 여부는?

■ WTO 제소는 여러 상황과 일정을 감안하여 시기를 결정하되, 가능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임

■ 여타 WTO 분쟁의 경우에도 상대국의 조치가 채택된 이후 필요최소한의 검토기간을 거쳐 제소를 진행하였음

ㅇ이번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검토를 완료할 예정임

※ △중-일 희토류 분쟁(2011년 6월 조치 공표, 2012년 3월 제소 ⇨ 9개월 소요) △한-일 수산물 분쟁(2013년 9월 조치 공표, 2015년 5월 제소 ⇨ 20개월 소요) △러시아-우크라이나 통과통행 분쟁(2016년 1월 조치 공표, 2016년 9월 제소 ⇨ 8개월 소요)

Q.15 WTO에 제소 시 최종 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 WTO 규정상 제소 시 패널(1심) 판정까지 약 15개월 정도 소요됨(양자협의 2개월, 패널 10~13개월)

* 상소 진행 시 최소 3개월에서 약 1년 이상 추가적으로 소요 가능

○ 다만, 실제 기간은 분쟁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될 수 있음

Q.16 WTO 제소가 실효적인 대응책인지?

■ WTO 제소는 국제적으로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 위반임을 확인받고 시정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임

○ WTO 제소 이후 분쟁 과정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국제적 공감대도 형성될 것으로 기대함

○ 일본도 이번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으므로, 향후 유사 조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WTO에서 불법 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함

○ WTO 제소 직후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소국이 위반 조치를 스스로 철폐하는 경우*도 있음

* 한미 도금강판 반덤핑 분쟁 : 패널 설치 후 4개월 만에 미측이 조치 철폐

Q.17 금년 연말에 WTO 상소기구가 정지되면 WTO 제소가 의미 없게 되는 것 아닌지?

■ 금년 연말에 남은 WTO 상소기구 위원 3명 중 2명의 임기가 도래할 예정인 것은 사실이나

ㅇ상소기구 기능 정지를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연말 정지 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려움

Q.18 WTO 일반이사회(7.23-24)에서 한국이 주장한 내용은?

■ 일본의 자의적 수출규제 조치는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로, WTO 다자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일으킬 것임을 강하게 제기함

ㅇ일본의 조치는 자유·공정무역을 강조하였던 그간의 일본 입장과 모순되고, 전 세계 산업생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조치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함

ㅇ또한, 양국 본부 인사가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하였음을 감안해 양국 대표단 간 1대1 협의를 진행할 것도 제안함

Q.19 WTO 일반이사회에서 한국의 발언에 대한 일본의 반응 및 여타 국가의 발언 여부는?

■ 일본은 자국의 조치가 강제징용 사안과 무관하며, 안보상의 이유로 행하는 수출관리 차원의 행위이므로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함

ㅇ한국의 1대1 협의 제안에는 별도의 응답을 회피함

■ 기타 회원국의 발언은 없었음

* 한일 간 입장 대립이 첨예한 사안인 점을 감안해 제3국은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

Q.20 그간 WTO에서의 대응 실적과 향후 대응 계획은?

■ WTO 상품무역이사회(7.8~9), 일반이사회(7.23~24) 계기에 일본 조치의 문제점 및 WTO 규범과의 불합치성을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음

* 상품무역이사회 :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WTO에 처음으로 공식 문제 제기
* 일반이사회 : 2년마다 개최되는 각료회의 외 W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 WTO 제소는 여러 상황과 일정을 감안하여 시기를 결정하되, 가능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임

Q.21 일본 수출규제 관련 국제공조 방안은?

■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미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 채널 및 WTO 등 다자 채널을 통해 계기별로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세계무역질서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설명하고 있음

* (외교부) 국제법 위반 등 일본의 논리에 대한 반박,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 강조
  (산업부) 일본 조치가 세계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WTO 규범 위배 등을 부각

■ 아울러, WTO 제소 등 필요한 대응조치도 취해 나갈 예정임

* 일본의 수출통제제도 운영 등 여러 상황과 일정을 감안하여 제소 시기 결정

■ **(구체적 메시지)** ①사법적 판단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조치 ②글로벌 공급망과 세계무역에 부정적 영향 ③WTO 위배 및 바세나르 체제 기본원칙 배치 등

Q.22 향후 국제공조 계획은?

■ 국내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 대외적으로는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과 대화노력을 이어나가고,

ㅇ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RCEP 장관회의(2019.8.2~3)에서처럼 계기마다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노노력하겠음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한·중·일·인도·아세안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으로 금번에는 중국에서 장관회의를 개최

Q.23 국제공조를 통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지?

■ 일본의 조치는 국제규범에 어긋나며,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다수 국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제사회에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 한국은 국제공조 외에도 일본과 대화를 통한 외교적 노력도 지속할 것이며, 대일 의존도 극복을 위해 수입선 다변화,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임

Q.24 현재까지 미국과 접촉한 결과 미국의 반응(입장)은?

■ 기본적으로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 조치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음

■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양국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유용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임

ㅇ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하여 스틸웰 동아태차관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로스 상무부 장관 등 미 고위 관계자들도 동 취지의 입장을 표명했음

■ 7월 29일 미국이 일시적으로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치를 동결시키고, 일정 기간 한일 양측이 외교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 소위 현상동결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제안한 것도 이러한 역할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음

■ 한국은 한일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미국의 이러한 역할이 지속되기를 기대함

■ 미국 업계 또한 일본의 조치로 인한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했다면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겠다는 반응임

*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정보기술산업협회(ITI), 전미제조업협회(NAM),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컴퓨팅기술산업협회(CompTIA), 소비자기술협회(CTA) 등 6개 단체 공동명의로 한국과 일본 정부에 서한 송부

Q.25 일본의 조치(7.4) 이후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동향은?

■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시행된 7월 4일 이후 일본 수출업체가 일본 정부에 한국으로의 개별 수출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불화수소, 레지스트 등의 일본 수출업체가 한국으로의 수출허가 신청(7.4, 7.8, 7.9)

■ 일본 경제산업성은 7월 4일 이후 개별 수출허가 신청 건 중 1건에 대한 수출허가를 승인하였다고 발표함(8.8)

Q.26 3대 품목 개별허가 전환이 3일 만에 전격 진행되었는데, 절차법적 문제는 없는지?

■ 3대 품목에 대한 조치로 기존 포괄허가의 효력이 상실되고, 기업의 물품 조달에 직접적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 고지나 유예기간 없이 조치한 것은 절차적 문제가 크다고 판단됨

Q.27 소재·부품 육성정책을 계속해왔는데 자립화가 낮은 이유는?

- 수요-공급기업 간 긴밀한 협력모델 부재로 전문기업 출현 제약
- 기획-기술개발-실증·양산 테스트-생산단계 단절
- 적시성 있는 투자 부족 등으로 핵심기술 확보와 산업 성장에 한계

Q.28 핵심 품목 대외 의존이 지속되는데 극복할 수 있는지?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은 제조업 정책의 핵심으로 꼭 달성할 필요가 있음
- 다소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통해 지나친 대외 의존을 낮추도록 범부처적으로 노력할 계획

Q.29 WTO 제소, 수입선 다변화, 품목 국산화 등 한국이 제시하는 대책들은 단기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 아닌지?

■ WTO 제소, 수입선 다변화, 품목 국산화는 단기적으로 유효한 대책일 뿐 아니라 특정국가 의존도 탈피를 위한 근본적 대책임

■ **(WTO 제소)** 일본 조치의 위법성을 국제적으로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며, 향후 유사 조치를 예방할 수 있음

* WTO 제소 직후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소국이 위반 조치를 스스로 철폐하는 사례 존재(한미 도금강판 반덤핑분쟁 시 패널 설치 후 4개월 만에 미국 조치 철폐)

■ **(수입선 다변화)** 일본 외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유효한 수단

○ 작년 말부터 업계와 수입선 다변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양산성능 평가 지원 등을 통해 EU·미국 등의 대체공급선을 즉시 확보함

■ **(품목 국산화)** 일부 품목들은 국내 생산 기반이 있어

○ 공장 신증설 관련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

○ 공급기업-수요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국산화를 확대하고 세제·금융·R&D 등의 강력한 지원 추진

Q.30 그동안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국산화가 제대로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 그간 정부와 업계는 소재 국산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

■ 다만, 핵심소재 개발에는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원천기술 노하우가 필요하고,

ㅇ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가 첨단 제품을 생산함에 따라 생산에 필요한 첨단 소재는 일본산이 많았던 것임

■ 앞으로 핵심소재 국산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도 꾸준히 기초과학 역량 확충 및 인력 양성을 추진해나가겠음

Q.31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각의 결정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조치는?

■ 한국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이번 결정은 정당한 근거가 없는 보복성 조치이자 이미 어려운 한일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상황을 악화시켜 온 책임이 일본에 있는 만큼,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일본에 있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함

* 외교부 1차관, 주한 일본 대사 조치(8월 2일 오후 5시)

■ 한국은 백색국가 제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국제사회에 주의 환기 등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별개로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과의 대화 노력도 계속해 나가고자 함

Q.32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계기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 한국은 한일 외교장관회담(8.1)에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음

ㅇ한편, 한국이 그간 외교적 협의를 통한 해결의 필요성을 지속 강조해왔음에도 한일 관계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강행하는 데 대해 일본에 유감을 표명하고, 사태가

추가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 조치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음

Q.33 한일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특사 파견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 이미 알려진 대로 한국은 지난 7월 두 차례 고위 인사를 일본으로 파견해 일본 고위 인사와 만났음

■ 당시 한국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제안하는 데 8개월이나 걸린 이유를 소상히 설명했고, 일본이 요구하는 제안을 포함하여 모든 사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도 전달하였음

Q.34 아베 일본 총리는 "한국이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 논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 했으며,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 정부가 전향적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 한일 정상회담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는데, 향후 양국 협의 전망은?

■ 한국은 지난 6월 19일 발표한 대로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재원 조성을 통한 해결 방안을 일본에 이미 전달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합리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의 장이 열려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음

○ 일본도 보복적 성격의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한국 정부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에 적극 호응해 주기를 기대함

Q.35 한일 GSOMIA 연장 여부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 현재까지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으나, 한국은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와 관련하여 한국에 대해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와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검토 중임

Q.36 미국의 고위 관리가 한일 간 현상동결합의(standstill agreement) 방안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 지난 7월 29일 미국은 한일 간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동결하고 일정기간 한일 양측이 외교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 현상동결합의 방안을 제시하였음

- 한국은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일본과의 협의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유감스럽게도 일본은 동 방안에 대해 즉각적인 거부 입장을 표명하였음

- 한국과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에게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장으로 나오길 촉구함

Q.37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내용은?

■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으로서,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시

* 강제징용 판결 관련 그간의 동향
  - 2018년 11월 동일한 요지의 대법원 판결 두 건(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 추가 선고
  - 위 세 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이외에 현재 계속 중인 국내소송은 12건+α
  - 강제징용 판결에 근거,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집행 진행 중
    - ·(일본제철) 9.7억 원 상당의 주식 압류 / 동 압류자산 현금화(매각) 재판 진행 중
    -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 압류
    - ·(후지코시) 7.6억 원 상당의 주식 압류 / 동 압류자산 현금화(매각) 재판 진행 중

Q.38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은?

■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1965)의 적용대상 및 범위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으로, 일본 기업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함

■ 한국은 역사 및 인권 문제인 강제징용과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삼권분립을 핵심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음

Q.39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 보도자료의 정부 입장과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은?

■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는 한일 청구권협정이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았음

■ 대법원은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시한 바, 한국 정부는 동 판결을 존중하며 동 판결은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 발표 등과 상치되지 않음

■ **(대법원 판결이 청구권협정 위반이라는 일본의 주장 관련)**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협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협정으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그 적용범위를 해석한 것인 바, 협정 위반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음

○ 강제징용 문제는 과거 불행했던 한일 간 역사에서 비롯되었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충분히 치유되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문제의 근원인 역사·인권 측면을 도외시하는 일본의 태도는 본질을 흐리는 것임

Q.40 일본 외무성이 청구권협정 협상기록 등을 공개하며,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데?

■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한국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임

■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협상기록은 새롭게 발견되거나 제기된 것이 아닌 이미 공개되었던 자료로, 한국 대법원도 심리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이미 고려하여 최종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음

* 일본 외무성 주장 관련 대법원 판결 내용
  - "위 8개 항목 중 제5항에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라는 문구가 있지만, 8개 항목의 다른 부분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위 제5항 부분도 일본 측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에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1961.5.10.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과정에서 대한민국 측이 '다른 국민을 강제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입힌 피징용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언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대한민국이나 일본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구체적인 교섭 과정에서 교섭 담당자가 한 말에 불과하고, 13년에 걸친 교섭 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되었던 내용도 아니다. 실제로 당시 일본 측의 반발로 제5차 한일회담 협상은 타결되지도 않았다."

Q.41 청구권협정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 한일 양국 간 분쟁이 있다면 일본의 요구대로 청구권협정상 중재로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닌지?

- 한국은 최근 고령의 피해자 조속 구제 필요성과 일본이 요구한 청구권협정상 분쟁해결절차를 균형 있게 고려한 강제징용 판결문제 관련 해결 방안을 일본에 제시한 바 있음

- 동 방안은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확정판결을 받는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한국으로서는 일본이 동 방안을 수용할 경우,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1항상 외교협의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이미 표명했음(6.19)

- 일본이 한국의 제시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분쟁해결절차를 일방적으로 악용하면서 법적 해결만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봄

■ **(협정상 중재를 수용하지 않는 이유)** 청구권협정 제3조2항 중재 규정은 1항상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아직 1항 협의가 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1항 이후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협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봄

■ **(패소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에 중재재판 회부에 소극적이라는 지적 관련)** 중재재판 회부는 패소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임

○한국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 나갈 것이나, 일본이 한국의 제시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분쟁해결절차를 일방적으로 악용하면서 법적 해결만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봄

※ 중재절차 관련 경과 및 현황

■ 일본 측,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양측 간 청구권 협정 제3조 제1항에 따른 외교협의를 공식 요청하는 구상서를 주일본대사관에 전달(1.9)

※ 우리 측은 일측과의 여러 접촉 계기에 동 요청에 대하여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협정 제3조 제1항에 따른 협의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 전달 예정이라는 취지의 구상서 회신(2.1)

○ 일본 측, 청구권 협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자신들의 중재인을 임명하였다고 통보하면서, 우리 측에 대하여도 30일 이내 중재인을 임명할 것을 요청하는 구상서 전달(5.20)

※ 우리 측은 협정 제3조 제1항상의 외교협의도 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방적인 중재절차 요청은 협정상 중재절차 진행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입장 하에 일측 요청에 무대응

○ 일본 측, 청구권 협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일본 측 제3국을 지명할 준비가 되었음을 통보하면서, 우리 측도 30일 이내(7.18한)에 우리 측 제3국을 지명할 것을 요청(6.19)

※ 우리 측은 일본 측의 일방적인 중재절차 요청이 협정상 중재절차 진행의 전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기존 입장 하에 동 요청에 무대응

※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진행 결과

■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선고

■ 2018년 11월 동일한 요지의 대법원 판결 두 건(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 추가 선고

■ 위 세 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이외에 현재 계속 중인 국내소송은 12건+α

■ 강제징용 판결에 근거,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집행 진행중
- ㅇ(일본제철) 9.7억원 상당의 주식 압류 / 동 압류자산 현금화(매각) 재판 진행중
- ㅇ(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 압류 / 동 압류자산 현금화신청(7.23.)
- ㅇ(후지코시) 7.6억원 상당의 주식 압류 / 동 압류자산 현금화(매각) 재판 진행중

Q.42 일본은 강제집행에 따른 현금화 등으로 인해 일본 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강제집행 절차 진행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국내 사법절차에 근거한 것이므로 일본의 주장은 부당함

○ 국제법상 국가책임은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를 그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위법하다는 점을 전제한 일본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Q.43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은 없는지?

■ 한국은 6월 19일 발표한 방안을 토대로,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에 열린 입장임

Q.44 한국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는?

■ 한국은 한미일 공조를 비롯한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오고 있음

ㅇ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최초로 안보리 결의 위반에 연루된 선박을 억류하였고, 이 외에도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등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왔음

ㅇ아울러, 안보리 북한제재위에 한국이 취한 조치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통보하였음

■ **(일본이 수출규제 논거로 '북한과의 연관성'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한국의 입장)** 우방국에 사전 정보나 설명 없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언론을 통해 대북제재 이행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며, 이는 우방국 간 대북제재 공조에 불필요한 균열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움

ㅇ특히, 한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위(전문가 패널)에 한일 양국이 국제 수출통제체제 이행에 관한 조사를 함께 받는 방안도 제시(7.12)하였으나, 일본은 동 제의를 거부하였음

※ 대북제재 관련성 시사 발언

-7월 4일 : 하기우다 자민당 간사장 대행, 명백하게 화학물질이 대량으로 수입되어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견되었다고 발언(후지TV 당대표토론회)

-7월 6일 : 오노데라 자민당 간부, 한국 기업이 불화수소 관련 물품을 갑자기 대량 주문한 후 행방을 알 수 없는데, 이는 독가스나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행선지는 북한이라고 주장

-7월 7일 : 호소가와 전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한국에서 3품목을 중심으로 제3국, 예컨대 북한이나 이란으로 유출 사례가 지속·상시 발생했다고 주장(후지TV 당대표토론회 시 영상으로 보도)

※ 관련성 부인 발언

-7월 12일 : 경제산업성, 부적절한 사안은 북한/제3국으로의 불법수출은 아니라며 재래식무기의 캐치올 제도 미비를 조치 배경으로 추가(수출관리당국 회의 및 브리핑)

-7월 16일 : 세코 경제산업성 장관, 제3국(북한 등)으로의 유출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일본 정부는 한번도 그런 설명을 한 바 없다고 강조(기자회견)

Q.45 서구 언론의 주요 논조는?

■ 서구 주요 언론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한일관계뿐 아니라 국제경제·지역안보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함

ㅇ워싱턴포스트(WP, 8.2)는 동 결정이 주요 무역 상대국 지위에 대한 상징적인 공격(a symbolic blow)이라고 보도했으며, AP통신, BBC 방송(8.2) 등은 수출 제한과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로 어렵게 된 한일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함

ㅇ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8.2)은 한일 무역 분쟁의 확대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로 인해 이미 훼손된 글로벌 공급체인과 미국의 동맹국 간의 안보 협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으며, 로이터통신(8.2)은 북한 비핵화 합의 도출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지적함

○ 워싱턴포스트(WP, 8.2)는 이번 분쟁은 경제적인 것이 아닌,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도하며 양국 간 역사 문제를 둘러싼 견해 차이에 주목함

■ 한편, 한일 간 무역 분쟁은 한국과 일본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며, 전 지구적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흐름을 감안해 접근해야 할 대상이라는 의견도 제기됨

○ 워싱턴포스트(WP, 8.2)는 한일 간의 공급 체인 네트워크와 같은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가 경제적 효율성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 있으나, 이러한 네트워크가 점차 타국이나 타국 기업을 강박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사용됨을 지적함

Q.46 최근 한일 간 민간·지자체 교류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의 토대가 되어 온 민간·지자체 간 교류는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일본은 부당한 보복성 경제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해야 할 것임

* 스가 관방장관, "한일 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본 정부는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 상호 이해의 기반이 되는 국민 교류, 지자체 교류는 앞으로도 제대로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7.29, 기자회견)

Q.47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만, 아세안 등 다른 아시아 국가 등과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되돌리는 것이 아닌지?

■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국가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함

* ①4대 국제수출통제체제(WA, MTCR, NSG, AG) ②3대 조약(NPT, CWC, BWC) 가입 ③캐치올 제도 운영 ⇒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만 해당

ㅇ한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국가로 전략물자 관리에서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일본의 전략물자 전문기관인 CISTEC도 한국의 수출통제체제를 우수하다고 평가함

*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200개국 전략물자 관리지수 순위를 발표하며 한국은 17위, 일본 36위로 평가(2019.5)

■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대 품목은 다른 국가들에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허용*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개별허가만 허용하여 한국을 부당하게 차별함

* 중국· 대만이 3대 품목 수입 시 일본 수출기업이 CP 기업인 경우 특별일반포괄허가 가능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우리의 대응

대한민국정부